열림교양대학 운영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성공회대학교 교육이념을 구현하고 핵심역량 중심의 교양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한 열림교양대학(이하 '교양대학'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〈개정 2022.02.23. 2022.03.30〉

제2조(기능) 교양대학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〈개정 2022.03.30.〉

- 1. 교양교육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
- 2.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
- 3. 핵심역량 설정 및 성과 관리
- 4. 교양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
- 5. 교양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소속 학생 지도 및 관리
- 6.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
- 7. 기타 교양대학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사업

제3조(조직 및 업무) ① 교양대학에 학장과 교육지원팀을 둔다. 〈개정 2022.03.30.〉

- ② 학장은 교양대학을 대표하고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, 총장이 전임교원 중에 임면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<개정 2022.03.30.>
- ③ 교육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〈신설 2022.03.30.〉
 - 1. 교양교육과정 총괄 운영 및 관리
 - 2. 교양교육과정 교과목 개설
 - 3. 교양대학 소속 학생 지원 및 관리
 - 4. 기타 교양대학 운영에 부수되는 업무
- ④ 학생의 교양교육 및 학사지도를 위해 교양대학에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이 소속될 수 있으며, 교원은 나눔융합전공대학과 겸직할 수 있다. 〈신설 2022.03.30.〉
- ⑤ 교양교육과정 관련 중요사항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다. 〈신설 2022.03.30.〉
- ⑥ 교육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수요자 의견 반영을 위해 학생모니터링단을 둘 수 있다. 〈신설 2023.06.21.〉
- 제4조(위원회의 설치) 교양대학에는 교양교육과정위원회를 두며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별도 소위원회나 연구팀을 둘 수 있다. 〈신설 2022.03.30.〉
- 제5조(교양교육과정위원회) ① 교양교육과정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학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전임교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장이 한다. 〈개정 2023.06.21.〉

-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 〈개정 2023.06.21.〉
- ③ 위원장은 교양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매학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 - 1. 교양교육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2. 교양교육 비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3. 핵심역량 설정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교양교육과정 환류 및 개선에 관한 사항
 - 5. 교양교육과정 체계에 따른 소속 학생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6. 교양교육과정 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
 - 7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- 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안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에 심의 요 청해야 한다. 〈본조 신설 2022.03.30〉

제6조(기타)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. 〈개정 2022.03.30.〉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